

4월12일 재·보궐선거 주요일정



- 본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다른 사람이 **임의로**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.
- 거소투표하는 사람의 투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등 **거소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**를 할 수 없습니다.
- 기표소 안에서 **투표지를 촬영**하면 안됩니다.
- 선거인의 **투표비밀**을 침해하면 안됩니다.

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는
국번없이

1390

신고자에게 **최고 5억원**까지
포상금 지급

4월 12일은 재·보궐선거일입니다.

- » 국회의원재선거 (상주시, 군위군, 의성군, 청송군)
- » 구미시의회의원보궐선거 (선산읍, 무을면, 옥성면)
- » 칠곡군의회의원보궐선거 (지천면, 동명면, 가산면)
- » 군위군의회의원보궐선거 (군위읍, 소보면, 효령면)

투표시간 오전 6시 ~ 오후 8시

선거일 투표
4월 12일 수요일

4월 12일(수) 투표할 수 없다면
4월 7일(금)~8일(토)
사전투표하세요



4월 7일(금)~8일(토) 미리 투표할 수 있어요

4월 12일(수) 선거일에 투표하세요



몸이 불편하여 사전투표소나
선거일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사람은

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어요



투표시간 :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

- **투표장소** : 재·보궐선거 실시지역의 읍·면·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
- 사전투표소에 갈 때에는 **신분증**을 꼭 가지고 가야 합니다.



투표시간 :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

- **투표장소** : 주민등록지상 살고 있는 가까운 동네에 지정된 투표소(투표안내문 기재)
- 투표소에 갈 때에는 **신분증**을 꼭 가지고 가야 합니다.

-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공무원증, 국가유공자증, 장애인 복지카드, 외국인등록증, 자격증, 학생증(모바일 학생증 포함)
- 관공서·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이들 기관이 기록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투표절차

관내선거인 자신의 주소지 지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사람

- 1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여부 확인함
- 2 본인확인기에 이름을 입력하거나 손도장 인식
- 3 투표용지를 받음
- 4 기표소 안에서 기표
- 5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음

관외선거인 관내선거인을 제외한 사람

- 1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여부 확인함
- 2 본인확인기에 이름을 입력하거나 손도장 인식
- 3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받음
- 4 기표소 안에서 기표 후 투표지를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투입구를 붙임
- 5 투표지가 든 회송용봉투를 투표함에 넣음

투표절차



- **거소투표 할 수 있는 사람** : 병원·장애시설에 오랫동안 머물거나 장애로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
- **신고기간** : 3월 21일 화요일부터 3월 25일 토요일까지
- **신고방법** :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주소지 구·시·군(읍·면·동 포함)의 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발송

거소투표신고서 배부처

- 구·시·군청 민원실, 읍·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
-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www.nec.go.kr에서도 출력 가능
- 중대한 장애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중에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등록된 장애인은 신고서를 주민등록 주소지로 받음

거소투표절차 : 머무는 곳에서 하는 경우

